홍보업무 규칙

제정 2015. 3. 31. 개정 2019. 10. 31. 개정 2024. 2. 14.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직제규정 제11조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(이하 "진흥원"이라 한다)의 체계적인 홍보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"홍보"란 진흥원에 대한 정보를 대국민에게 알리고 진흥원의 주요 사업 등 업무 활동에 관하여 대외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모든 의사 전달 활동을 말한다.
- 2. "광고"란 진흥원을 홍보하기 위하여 언론기관 및 대외 관계기관 등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진흥원이 필요한 내용을 싣거나 방송하는 것 또는 진흥원 외의 자가 진흥원이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진흥원이 발간하는 간행물 그 밖의 유·무형자산을 활용하여 홍보하는 것을 말한다.
- 3. "보도"란 진흥원의 주요 사업과 연구 실적 등의 성과·결과·예정 사항에 대한 자료를 작성하여 언론기관에 제공하여 싣는 것 또는 언론기관에서 취재하여 싣거나 방송하는 것을 말한다.
- 4. "홍보자료"란 진흥원과 진흥원 사업, 경영 관련 정보 등을 대내외에 홍보하기 위하여 제작된 모든 보도자료, 간행물, 시청각자료, 전산자료, 기념품 등을 말한다.
- 제3조(적용 범위) 진흥원의 홍보 업무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서 특별하게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제4조(홍보활동의 원칙) ① 진흥원의 임직원은 외부인이나 언론기관, 홍보 매체와 접촉할 경우에는 진흥원의 위상과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홍보와 명성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.
 - ② 언론기관 및 대외 관계기관의 홍보 요청은 홍보 업무 담당 부서(이하 "홍보부서"라 한다)로 창구를 일원화하고, 관련 부서는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
- 제5조(홍보위원회)① 보다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대내외 홍보정책 수립과 이행을 위한 원내 상시 자문기구로 홍보위원회(이하 '위원회'라 한다)를 둔다.

-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및 자문한다.
 - 1. 연간 홍보전략과 홍보계획에 관한 사항
 - 2. 본부별 홍보 계획과 홍보예산 편성·집행에 관한 사항
 - 3. 원내 홍보 활동 사전 점검 및 자문, 홍보 매뉴얼 마련
 - 4. 홍보계획의 이행 점검·실적 관리, 홍보효과의 측정·평가에 관한 사항
 - 5. 그 밖에 홍보 활동을 위해 필요한 사항
- ③ 위원회의 장은 홍보부서장으로 하고, 위원은 본부별 홍보담당자 및 외부 전문가로 한다.
- ④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간사를 둘 수 있다.
- ⑤ 위원회는 안건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
- 제6조(홍보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) ① 각 본부의 부서장(이하 '각 부서장'이라 한다)은 소 관 주요정책, 사업, 행사, 연구과제 등의 홍보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 - ② 홍보부서장 또는 홍보위원회는 진흥원의 사업, 행사, 연구과제 등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부서와 협의하여 홍보의 방향·시기 및 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.
 - ③ 각 부서는 주무부처 등과 홍보계획에 관해 미리 협의할 수 있으며, 이와 관련한 사항은 홍보부서와 사전에 공유하여야 한다.
- 제7조(홍보자료 제작) ①각 부서장은 홍보자료를 제작·배포할 수 있으며, 홍보부서장은 홍보자료의 제작지원 및 배포 등의 업무를 총괄한다.
 - ② 각 부서장이 진흥원의 주요 경영, 사업성과, 행사 등과 관련하여 제작하는 홍보자료 (간행물, 행사 자료 등)는 기관의 경영목표와 방향을 일관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.
 - ③ 각 부서장이 홍보자료를 제작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관의 이미지와 사업 모두가 대내외에 효과적으로 알려질 수 있도록 기관 소개, 사업 내용, 행사, CI 등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. 다만, 기관 간 홍보자료 활용 시 관계부처 및 홍보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.
 - ④ 제2항 및 제3항과 관련한 사항을 제외하고 홍보자료 발간 및 등록과 관련하여서는 관계 법령이나 진흥원의 규정에 따른다.
- 제8조(홍보 간행물의 범위) 제7조에 따른 진흥원 홍보 간행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관계 법령이나 진흥원 규정에 따라 발간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.
 - 1. 정기·비정기 간행물로서 홍보를 목적으로 외부에 나가야 할 간행물
 - 2. 포스터 등 인쇄물이나 활판 등 색도가 4도 이상인 간행물

- 3. 홍보부서장의 협조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간행물
- 제9조(홍보 간행물 검토 기준) 각 부서장은 홍보 간행물을 발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 준을 검토하여야 한다.
 - 1. 진흥원 사업에 대한 홍보의 필요성
 - 2. 배부처의 적정여부와 발간방법의 경제성
 - 3. 규격, 크기, 글자체, 종이의 질 등 진흥원의 일반 간행물과의 통일성
 - 4. 기존 간행물과의 내용 중복여부
 - 5. 진흥원 CI와의 통일성
- 제10조(홍보자료 통보) 진흥원의 직원은 진흥원의 여러 가지 경영 정보, 행사사항, 연구결과, 침해사고 상황 등 홍보자료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홍보부서장에게 알려야 한다.
- 제11조(광고 관리) 각 부서의 장은 신문, 라디오, 텔레비전 등 대중매체를 통한 광고, 그 밖의 공고나 알리고자 할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홍보부서장에게 협조를 받아야 한다.
- 제12조(CI 관리) 진흥원의 직원은 기관 이미지와 관련된 작업을 진행할 경우 CI 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하며,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홍보부서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9.10.31.>
- 제12조의2(후원명칭의 사용승인) 진흥원의 직원은 기관 후원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홍보부서장에게 협조를 받아야 한다. 신청 및 승인 절차는 「기관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지침」에 따른다.<신설 2019.10.31.>
- 제13조(언론 접촉) ① 진흥원의 직원은 언론기관 등으로부터 취재(인터뷰, 방송 출연, 기고, 자문, 통계 등 자료 제공 등을 포함) 협조를 받은 경우에는 소속 부서장 및 홍보부서에 즉시 알려야 한다.
 - ② 진흥원의 직원은 업무상 지시에 의하지 않고 개인적 필요에 따라 업무와 관련된 기고 및 인터뷰 시에는 기관의 입장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기관명칭을 사용하지 않거나 보도가 나가기 전에 홍보부서에 알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 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부 절차와 양식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.

- 제14조(언론 모니터링 등) ① 각 부서장은 진흥원의 주요 사업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기 위하여 언론보도 및 뉴 미디어 등을 모니터링하고, 언론보도에 대하여 의견 또는 입장을 발표하여야 할 필요가 있거나 국민이 정부의 정책을 잘못 이해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때에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주요 언론보도에 관한 모니터링 내용, 진흥원의 입장에 대해서는 홍보부서장 과 실시간으로 공유하여, 진흥원의 의견 또는 입장을 발표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신속성·공정성·투명성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15조(뉴 미디어를 통한 홍보) 진흥원의 정책, 주요 사업 등을 웹메일시스템, 소셜 미디어 등 뉴미디어를 통한 홍보 방안을 마련하고, 각 부서장은 이를 적극 활용하여 홍보를 효율적·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.
- 제16조(홍보교육) 진흥원의 주요 사업 성과를 홍보하기 위한 임직원의 효율성·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홍보교육, 위기관리 대응 등의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- 제17조(취재지원실의 설치 운영) 정부에 등록된 일간신문사, 통신사 및 방송사 기자의 진 흥원 업무관련 취재 편의를 위해 진흥원 본사 및 지역사무소 각 소재지에 취재지원 공 간을 마련하고 상주 지원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.
- 제18조(부서간 협조) 홍보부서장은 진흥원의 대내외 홍보 활동을 위하여 홍보 담당자를 지정하도록 부서에 요청할 수 있으며, 요청을 받은 각 부서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부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이 규칙시행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.

부칙<2019.10.31.>

- 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이 규칙시행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<2024. 2. 14>

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